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19-59

제출년월일 : 2019. 0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마포구협치회의의 설치와 기능, 구성(안 제7조~제9조)
라.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의장의 직무(안 제10조~제12조)
마. 회의 개최 및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의견청취 등(안 제13조~제16조)
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안 제17조)
사. 협치조정관(안 제18조)
아.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안 제19조~제20조)
자.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등(안 제21조~제24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19. 3. 21. ~ 4. 10.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원안 동의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권고사항 반영

- 권고대상: 안 제5조 제2항(구청장의 책무)
- 권고사항: 민관협치의 목적은 구민의 구정참여를 도모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있는 바, 구민에게 성별, 연령, 계층에 따른 제약 없이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다양한 주체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구청장의 책무의 내용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조치결과: 권고사항 반영

원 조례안	심의회 상정안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② 구청장은 <u>성별, 연령, 계층 등에 따른 차별 없이</u>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신설 검토 결과: 원안 동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 (2019. 4. 16.)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민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 연령, 계층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포구협치회의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마포구협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회의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능 등)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민간의 비율이 10분의 7을 넘어야 한다.
②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을 공동의장으로 하며, 위촉직 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및 협치조정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①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

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제1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8조(협치조정관)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9조(민관협치 협약) ①구청장은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회의가 권고한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교육·홍보 등) 구청장은 구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민관협치 관련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백서 발간 등)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이행 상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마포구협치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마포구협치회의 운영비(안 제7조~제16조) 및 민관협치 활성화(안 제17조~제24조) 규정에 따른 사업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비가 아닌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할 예정임

○ 협치조정관 채용(안 제18조)에 따른 인건비는 구비로 지급하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연간 77,20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협치조정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채용 예정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총무과(마포1번가 정책추진단) 박미진
연 락 처	02-3153-8074